



제 397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집단에너지시설 효율개선 지원 근거 마련 등〉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3157호)

2022.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민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1. 11. 5.
3. 회부연월일 : 2021.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화와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자 설비를 보수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집단에너지시설 현대화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u>확대</u>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 ----- <u>확대</u> <u>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u> <u>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u>한다</u> .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 ----- ----- <u>하며, 산업통</u> <u>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u> <u>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업자 또</u> <u>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u> <u>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집단에너지사업은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¹⁾가 우수하며, 분산전원으로서의 편익도 제공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에 적합한 에너지 공급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²⁾할 수 있도록 규정³⁾하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 사용자(이하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사용가 기계실 내의 열교환기, 순환펌프 등과 같은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용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에너지소비효율 저하, 사용자 불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개선 및 교체를 유인할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1) 집단에너지는 일반발전 비해 에너지이용효율이 우수(일반발전: 전력 49.9%, 손실 50.1%, 열병합발전: 전력 42.1%, 열 38.6%, 손실 19.3%)한 것으로 평가됨.(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5139-302) 중 장기사용열수송관개체(‘21년 예산액: 160억원) 사업을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장기사용(20년 이상) 열수송관 개체비용의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7호는 사용시설을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은 공급시설(열원시설, 열수송시설)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사용시설의 상세 구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사업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재정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개선에 필요한 자금 등을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사용시설의 개선 및 교체를 유도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화 및 현대화를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개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⁵⁾

[표 2] 재정지원 목적 및 대상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산업부 수정의견
지원 목적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u>집단에너지시설</u> <u>효율개선</u>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u>집단에너지시설</u> <u>효율개선 등</u>
지원 대상	사업자	사업자, <u>사용자</u>	사업자, <u>사용자</u>

5) < 산업통상자원부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u>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u>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 ----- <u>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u> ----- -----.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 ----- <u>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u> ----- -----.

한편, 현행법 제26조는 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이하 “개선명령 등”)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그런데 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사업자 및 사용자의 기술기준 유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로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최근 10년간 동 규정을 근거로 개선명령 등을 명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 제26조제1항 후단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집단에너지시설에 적합한 기술기준 유지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중(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권고는 「행절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⁷⁾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지도의 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 권고의 실효성이 담보되기에는 미약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

7) 「행절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